

국외교류학점인정 운영 지침

※ 국내·외 교류 학점인정 범위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함. (1개 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이내)

(2014학년도 2학기에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2014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적용함)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인정하며, 복수학위생(편입생 제외)은 재학 중 본교 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총 70학점까지 인정함.

1. 정규학기

가. 인정종류 :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나. 인정학점범위 : 재학연한 중 2개 학기 35학점(1개 학기 최대 18학점)

단, 복수학위생은 2개 학기 이상 수학 가능.

단, 편입생은 재학연한 중 1개 학기 18학점 이내 인정 가능.

※ 교환, 7+1 파견학생은 학부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 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할 경우 1개 학기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며 (단, 학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18학점까지 인정가능), 학부 수업과 병행할 경우에는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함.

다. 국외교류 최소 이수학점 : 1개 학기 6학점

→ 미 이수시 7+1 파견학생은 파견학기 7+1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환수해야함

라. 인정절차

1) 출국 전

학과별 내규를 통한 학점인정 관련사항(①전공 인정 여부 ② 인정 학점 ③Pass/Fail 기준) 확인 및 온라인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제출(또는 자비유학 신청)기간 : 6, 12월 소정기간(국제교류팀 공지)

* 7+1(학과/우수입학)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서약서 제출기간 중 입학허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귀국 후(수학 학기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 :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가) 귀국보고서/만족도 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제외)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미입력시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불가)

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처

3,6,9,12월 지정기간(국제교류팀에서 공지) /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다)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학생 제출서류

(1) 학점인정요청서 (2) 해외대학교 성적표 원본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본교 성적증명서

(5) 해외대학교 성적 등급 기준표

(해외대학교 성적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6) 귀국보고서 출력본

라)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1) 학과장 승인을 득한 학점인정요청서 (2) 해외대학교 성적표 원본

마. 성적인정 확인자

1) 제1(이중,제2,부)전공 : 해당전공 학과장

2) 교양 : 교양학부장

3) 자유선택 : 소속 1전공 학과장

바. 복수학위생의 졸업시험(논문) 면제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한 전공이 본교 전공과 일치 또는 유사한 경우만 가능

2. 해외연수(휴학 중 또는 방학 중)

가. 인정학점범위 : 최대 6학점

단, 2개 외국어 이상 연수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가능하나 동일기간(방학 또는 휴학)의 경우 6학점까지 가능함

나. 인정가능기관 : 4년제(학사 학위 수여 대학) 대학 부설 어학원

단, 영어권은 미국, 캐나다, 영국(아일랜드포함),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공에서의 연수만 인정

다. 인정기준 : 48시간이상 3학점, 96시간이상 6학점

라. 인정절차

1) 출국 전 : 학과장 승인 후 해외연수계획서 국제교류팀 제출

(미 제출자는 추후 학점 인정 불가)

2) 귀국 후 : 해외연수학점인정요청서 국제교류팀 제출

(성적표, 수료증 첨부 - 이수시간 및 기간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 상 내용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이 국문으로 번역하고 학과장의 확인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성적인정 확인자

가) 제1(이중,제2,부)전공 언어권 국가의 경우 해당 언어 학과장 확인

필수

- 나) 영어권 어학연수는 교양학점으로 인정- 학과장 인정 불필요
- 4) 서류 제출 시기 : 3,6,9,12월 지정기간(국제교류팀에서 공지)
- 5) 성적 산입학기
 - (1) 방학 중 : 방학 직전 학기
 - (2) 휴학 중 : 복학 학기
 - ※ 휴학 중 학점인정은 재학연한 중 1회에 한함
 - ※ 휴학 중 학점인정 시 본교에 인정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

3. 참고사항

가. 학점인정

- 해외대학교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단, 해외대학교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해외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없음.
- 수학지원서/ 국외교류학점인정요청서 기재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한(예정) 교과목명(원어)은 직역하여 국·영문 교과목명 입력란에 기재하거나,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명으로 입력해야 함.
영문 교과목명은 영어 성적증명서 발급시 표기되는 과목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해외대학교 정규 수업에서 취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외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학점이 최대인정가능학점(1개 학기 18학점/국내외교류 최대 인정학점 35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성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학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는 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함.
따라서, 학생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학점을 취사선택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해외대학교 중 Quarter제(1년 4개 분기)로 운영되는 경우 2개 Quarter 수강시 최대 18학점까지 인정가능하며, 1개 Quarter 수강시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함.
- 해외대학교 성적표 상 표기되어 있는 학점에 근거하여 학점을 인정하되, 해외대학교의 성적 및 학점체계가 본교와 상이할 경우 해외대학교의 성적 및 학점제도를 고려하여 본교 학점으로 변환하여 인정할 수 있음. 학점 변환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외대학교의 정규학기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본교 정규학기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인 18학점과 동일하게 보고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음.

- ECTS는 유럽권 학점인정단위로 1학기에 일반적으로 30 ECTS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본교의 국외교류 최대 인정학점인 18학점에 대입시 1ECTS는 0.6 학점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판단은 학과장이 함.
- 해외대학교 성적표 상 이수 학점이 불확실한 경우(어학연수과정 등)에는 시수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국외교류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 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Pass/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 (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단,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참고. 단,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수학지원서에 학과장이 승인한 사항은 학점인정요청서 승인 시 반복할 수 없음 (수학지원서와 학점인정요청서 승인자가 다른 경우 포함)
- 학점인정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이수구분, 이수학점, 성적)은 변경 불가함. 단, 동일학과(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 ⇔ 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함.

나. 기타

- 정규 또는 단기 학점 인정 기간 동안 한 학생이 최대 3명의 학과(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서류를 2~3일 내에 처리하여 학생에게 전달해야 함.

- 7+1 파견학생은 해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수학할 수 없음.
-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학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내되어야 함.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유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교류처장의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음. 끝.